

《2022. 8월 1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2022년 신년화두 慎終謀始 (신종모시)

『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』



인사 청탁 등의 금지



개 요

○ 인사 부정청탁이란?

-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·승진·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
○ 적발 시

-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,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,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
○ 관련근거 : 청탁금지법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

- ① 인사(채용, 승진, 전보, 상훈 등)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3. 채용·승진·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
관 련 판 례

- (채용) 공직자인 부모가 아들이 해당 기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기관 채용 담당직원에게 청탁해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,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기관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 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 (2018. 6월 법원 판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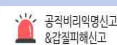
▶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을 한 것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공직자 과태료 1,000만원 부과

- (전보) 공직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을 특정 자리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탁 (2018. 9월 법원 판결)

▶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 과태료 300만 원

부조리 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



클릭, 케이위슬 연결